

의안번호	2207640
의 퇴 인	김남희 의원
회 답 일	2025. 1. 24.
추계번호	25C0396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50억 9,100만원(연평균 210억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30	—	—	—	—	30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100	—	—	100	—	200	4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9조)	4	4	4	4	4	20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운영(안 제22조)	20,143	20,549	20,962	21,384	21,803	104,841	20,968
추가재정소요	20,277	20,553	20,966	21,488	21,807	105,091	21,018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0조(자기돌봄비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돌봄서비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돌봄 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3조(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생계와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4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1. 직업 적성검사 및 진로 상담프로그램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 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5조(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자립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7조(주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이자 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8조(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개최, 국·공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9조(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이자 가 공공의 아동·청소년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0조(사례관리)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음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1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사회보장 급여 수급 보호)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또는 돌봄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또는 돌봄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2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5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 공무원)	(제1항)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을 둔 (제5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5항) 재량규정
19	안 제26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 기본계획)	○	○ 여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8조(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9조(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정책심의위원회)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5	안 제10조(자기돌봄비 지급)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1조(돌봄서비스 지원)	×	
7	안 제12조(상담 지원)	×	
8	안 제13조(교육 지원)	×	
9	안 제14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	
10	안 제15조(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11	안 제16조(자립 지원)	×	
12	안 제17조(주거 지원)	×	
13	안 제18조(문화활동 지원)	×	
14	안 제19조(시설의 우선 이용)	×	
15	안 제20조(사례관리)	×	
16	안 제21조(돌봄 아동·청소년 · 청년 사회보장급여 수급 보호)	×	
17	안 제22조(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8	안 제25조(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9	안 제26조(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제21조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자 수 등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자기돌봄비(안 제10조), 돌봄서비스(안 제11조), 상담(안 제12조), 교육(안 제13조), 직업체험 및 취업(안 제14조), 의료 및 건강관리(안 제15조), 자립(안 제16조), 주거(안 제17조), 문화활동(안 제18조), 시설 우선사용(안 제19조), 사례관리(안 제20조), 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안 제21조) 등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배치(안 제25조) 및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안 제26조)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
 - 또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시범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표 2] 참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

[표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2025년도 예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2024~2025년 시범사업으로 선도모델 마련 추진 중 · 가족돌봄청년 선제발굴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핫라인 연락체계 구축, 밀착형 사례관리 제공 등을 위해 전담팀 운영 － 자조모임 운영·관리 지원: 가족돌봄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돌봄 경험 공유 및 정서 관리 등을 위해 자조 모임 운영·관리 지원 －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봄으로 인해 본인을 돌볼 기회가 없던 청년 본인의 건강관리, 문화경험, 자기개발 등(의료·문화여가·진로·교육비 등) 위해 1인당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발굴, 상담 등 사례관리 지원 및 연계,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사례관리 제공·연계(프로그램 제공 포함), 사후관리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 심리·정서 회복 지원: 고립·은둔 청년(개소당 80명)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유적 관계 및 사회관계 형성 등 심리·정서 회복 지원 － 은둔청년 특화지원: 은둔 청년(개소당 20명) 대상으로 공동거주 공간에 입소, 일상생활관리 연습(수면, 식사, 위생), 규칙 준수 및 소통 훈련 등 지원	국비 4,261 (국고보조율 70%)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6조·제8조·제9조·제22조)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2023년 수행한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는 가족돌봄 청소년, 은둔고립 청소년, 채무상속위기 청소년, 기타 신소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2023년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3,124만원 소요)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사례와 동일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000만원으로 추계

[표 3]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30	-	-	-	-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삶의 질 및 복지 수요 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22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9,500만원 소요)을 실시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에 매년 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3년 주기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억원으로 추계

[표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100	-	-	100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원 구성 및 회의 참석수당 단가,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현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7명의 위촉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대면 회의 시 15만원, 서면 회의 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대면 회의 2회, 서면회의 2회 등 총 4회의 회의를 개최
- 본 추계에서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에 8명(전체 15명 중 최소 과반수)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매년 회의는 대면 회의 2회, 서면 회의 2회 등 총 4회 개최하여 대면 회의 시에는 위촉위원 1인당 15만원, 서면 회의 시에는 위촉위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00만원으로 추계

[표 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수당 단가(A)	0.125	0.125	0.125	0.125	0.125	-	-
위촉위원 수(B)	8	8	8	8	8	-	-
회의개최 횟수(C)	4	4	4	4	4	-	-
추가재정소요(A×B×C)	4	4	4	4	4	20	4

주: 대면회의 2회 개최에 회의 당 15만원 지급, 서면회의 2회 개최에 회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회의수당 단가를 12.5만원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

□ 제정안에 따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시·도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사례를 적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및 시·도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국에 17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17개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보건복지부는 4개 시·도에서 청년미래센터의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표 2] 참고), 이는 시범사업이므로 본사업이 되었을 경우의 지원 규모를 현실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워 별도의 유사사례를 적용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시·도의 2024년도 예산서상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균 공무원임금 상승률¹⁾ 전망치에 따라 변동하고,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²⁾하여 추계
 -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예산 단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합계액으로 한정

[표 6] 보호종료아동 자립전담기관 예산(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자립지원 운영비
합 계	8,427	10,908
서울특별시	1,276	1,961
부산광역시	708	1,050
대구광역시	335	540
인천광역시	453	642
광주광역시	413	675
대전광역시	335	517
울산광역시	98	157
세종특별자치시	79	45
경기도	1,612	2,269
강원도	413	608
충청북도	315	443
충청남도	374	504
전라북도	394	20
전라남도	567	22
경상북도	374	576
경상남도	539	713
제주특별자치도	142	165

주: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본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48억 4,100만원으로 추계

- 1)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권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2)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2024.3.29.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표 7]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A)	8,750	8,916	9,086	9,258	9,434	45,445	9,089
운영비(B)	11,393	11,632	11,877	12,126	12,369	59,397	11,879
추가재정소요(A+B)	20,143	20,549	20,962	21,384	21,803	104,841	20,9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